

한국부식학회 울산·울주지부 규칙

제1장 총 칙

제 1 조

본 지부는 한국부식학회 울산·울주지부(이하 본 지부라 칭함)라 부른다.

제 2 조

본지부는 부식과 방식학에 관한 제반학술 및 기술의 발전, 보급, 정보교환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본지부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연구발표회, 학술강연회 및 강연회 개최
- 2) 방식기술의 향상 및 부식에 관한 상호 정보교환 및 협조
- 3) 연구의 장려 및 편의 도모
- 4) 학술 및 기술자료의 배포
- 5) 기타 본지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

본지부의 사무실은 울산대학교 금속 및 재료공학과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 5 조

본지부 회원은 울산·울주 지부에 거주(근무)하는 한국부식학회회원(정회원, 종신회원) 및 지부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 6 조

본지부 회원규정은 한국부식학회 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고 지부특별회원은 본지부의 발전을 위하여 지부에 가입한사람 및 법인으로 한다.

제 7 조

본지부의 회원 및 특별회원은 한국부식학회 규칙 제 5 조의 규정된 권리를 갖는다.

제3장 임 원

제 8 조

본지부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지 부 장 1명
- 2) 부지부장 1명
- 3) 지부이사 약간명(총무 1명, 간사 1명, 기타 약간명)
- 4) 지부감사 1명

제 9 조

지부임원은 지부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지부장은 지부의 추천을 거쳐 본회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임할 수 있고 임원이 결손될때는 지부이사회를 소집하여 임원을 결정한다.

제11조

지부장은 본지부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2조

지부이사는 임원회의의 구성원이 되며 소관업무를 관장 협의한다. 지부장이 유고시는 부지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지부감사는 회무를 감사한다.

제14조

지부장은 지부회원중 지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을 지부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부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5조

회의는 지부총회와 임원회의로 나눈다.

제16조

지부총회는 지부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매년 9월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정회원의 4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1주일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제17조

지부 정기총회에서는 ;

- 1) 전년도 사업보고
- 2) 전년도 수지결산보고
- 3)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 4) 기타 본지부 목적달성을 위한 기본사항을 의결한다.

제18조

지부임원회는 지부장, 부지부장, 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지부장이 이를 소집하며, 본지부의 주요업무를 심의 결정한다.

제19조

각 회의의 의결은 출석자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20조

본지부의 자산은 다음의 각 항목으로 한다.

- 1) 본회의 경비 보조
- 2) 찬조금품
- 3) 기타의 수입

제21조

자산의 관리방법은 임원회에서 정하고 지부장이 관리한다.

제22조

본지부의 회계년도는 본회의 회계년도를 따른다.

부 칙

제23조

본지부 규칙의 개정은 지부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4조

본지부 규칙에서 미비된 사항은 한국부식학회 정관 및 규칙에 따른다.

제25조

본지부 규칙은 1987년 5월 일로 부터 발효한다.